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 8. 10 선고 2015가단50905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전 문

원고A

피고(선정당사자)B

피고C

변론 종결2016. 6. 29.

판결 선고2016. 8.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B,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선정당사자) B는 12,000,000원, 피고 C, 선정자 D은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6. 2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E과 F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E은 1996. 5. 2. F과 사이에 서산시 G 임야 9421m²(이하 부동산 소재지는 번지 이하 주소만 표기한다), H 임야 1580m², I 임야 664m², J 임야 605m², K 임야 1031m², L대 734m²를 매매대금 1억 2,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2,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000만 원은 1996. 5. 28.에, 잔금 7,000만 원은 1996. 6. 21.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선정당사자) B(이하 '피고 B'라고만 한다)가 F을 대리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으로 다음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분묘 2기[할머니, 아버지(매도인)]는 개발시기에 이장하기로 한다.

그 외 무연고묘지 일체는 잔금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도인이 명도해 주기로 하고 이에 법률적인 책임을 매도인이 지기로 한다(피고 B, F 연대책임, 이장비용 포함)

나. 분묘의 이장

1) E은 2011. 10. 7. 매매대상 토지 위에 있는 무연고묘지의 소유자 M와 합의하여 묘지 4기를 철거하고 M에게 묘지 이장 비용 1,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당시 E과 M 사이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묘지 이장 이행합의서가 작성되었다.

묘지 이장 이행합의서

1. 위 부동산에 소재한 M 소유 (조상)묘지 4기는 2011. 10. 15.까지 M가 전부 이장한다.
2. 묘지 이장에 관한 비용으로 1,200만 원은 이 합의서 작성 완료시 즉시 지불한다.
3. 위 약정을 (비용 지급시) 기한 내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 이미 지불한 비용은 즉시 환불조치하며 토지소유자는 M의 승낙 없이 임의로 위 묘지를 이장 처리하여도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아니한다.

2) 피고 B는 2014년경 매매대상 토지 위에 있던 할머니와 아버지의 분묘 2기를 파묘하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

다. E과 F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관계

1) E은 2013. 1. 6.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그 아내인 원고가 있다.

2) F은 2007. 3. 30. 사망하여 그 어머니인 N이 F의 채무를 상속하였는데, N도 2015. 1. 26.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 B, C, O, 선정자 D(이하 '선정자'라는 명칭은 생략한다)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F과 피고 B는 매매대상 토지 위에 있는 무연고묘지 이장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는데 E이 그들을 대신하여 묘지 이장에 관한 비용으로 1,2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F의 연대채무자인 피고 B는 위 1,200만 원, F의 상속인인 피고 C, D은 상속지분에 따라 300만 원(= 1,200만 원 × 1/4)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의 항변 가) E, F, 피고 B는, E이 매매대상 토지를 매수하고 F이 이를 개발하여 처분하면 이익금 중 일부를 F에게 분배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후 개발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F이 사망함에 따라 분묘 이장에 관한 특약사항은 조건의 미성취로 인해 무효로 되었다.

이후 E과 피고 B는, E이 무연고묘지 4기의 철거에 관하여, 피고 B가 할머니와 아버지 분묘의 이장에 관하여 각 책임을 지기로 묵시적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는 할머니와 아버지의 분묘를 이장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무연고묘지의 철거 비용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10년 이상 지나 위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구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판단 먼저 피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살펴본다.

E이 F과 사이에 1996. 5. 2.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F, 피고 B가 연대하여 잔금

지급일(1996. 6. 21.)로부터 2년 이내에 이장비용을 포함하여 무연고묘지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앞서 보았다.

소멸시효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므로, 원고가 피고 B와 F를 상대로 무연고묘지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기한인 1998. 6. 20.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08. 6. 20. 무연고묘지 이장에 관한 권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채무자가 시효 완성 전에 시효중단 등의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시효완성 후에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데, F과 피고 B는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E으로 하여금 이를 신뢰하게 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소멸시효 주장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1).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과 F 등이 생전에 만나 분묘 이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거나, F이 2007. 3. 30. 사망하고 E이 그 이후인 2011. 10. 7. 무연고묘지의 소유자인 M를 만나 이장에 관한 합의를 마치고 이장비용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F이나 피고 B가 E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거나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이를 신뢰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매매계약상 F과 피고 B가 이장 비용을 포함하여 무연고묘지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이상 E이 F을 대신하여 무연고묘지를 이장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뒤 피고들에게 그 지급을 구하는 것도 위 계약내용에 따른 권리의 행사로 보아야 하고 그 권리를 별개의 구상금채권으로 보아 소멸시효가 따로 진행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구나 E은 무연고묘지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이후에 이장비용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김지영

별지

판단도 참고로 설시한다.